



“사업장 보건관리실무”, “뇌심혈관질환 예방 교육 매뉴얼” 제작보급

노동부는 1. 9(금)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건강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를 위한 실무지침서인 “사업장 보건관리실무”와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뇌심혈관질환 예방 교육 매뉴얼”을 마련·보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타이어에서 연이은 돌연사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에 보다 내실을 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보건관리 실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일선 사업장들의 요구가 있어 금번 매뉴얼을 개발하게 되었다.

“사업장 보건관리실무”는 사업장에서 보건관리를 위해 지켜야할 각종 규정의 안내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작업환경관리방법, 작업관련성질환의 조사·평가 및 예방방법, 보건교육 계획수립 및 결과관리, 사업장 건강증진운동 전개방법 등을 상세히 수록하여 보건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로 제작되었다.

“뇌심혈관질환 예방 교육 매뉴얼”은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에 대한 증상 및 관련 예방법으로 권장되는 금연방법, 운동요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뇌심혈관질환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는 방법과 효과적인 예방교육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보건관리자 업무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금번 매뉴얼은 보건관리자 선임사업장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등에 보급되어 각종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동 자료는 노동부(www.molab.go.kr)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보건사업/통합자료실)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2009년 1월부터 석면제품의 수입·사용 전면 금지

- 석면개스킷, 산업용 석면마찰제품 포함 -

노동부는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09. 1. 1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전면 금지(2007. 7. 2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7년 1월 1일부터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을 금지한 이래 2008. 1. 1 ‘석면방직제품’, ‘석면전기·전자제품’ 금지 등 일년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금지 하였고 금년부터는 ‘석면개스킷제품’, ‘산업용 석면마찰제품’도 금지제품에 포함시켜 전면적으로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지대상 석면제품을 불법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지금까지 금지된 제품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 압출성형시멘트판 : 건물 외장재 등
- 석면방직제품 : 석면사, 석면포, 석면장갑, 석면로프, 석면테이프 등
- 석면 전기·전자제품 : 전원코드보호재, 모터부품재, 히터보관유지재 등
- 석면 접착제품 및 기타 석면함유 제품 : 타일접착재, 금속·콘크리트 접착재, 목재접착재 등
- 석면개스킷제품 : 배관 연결부위에 사용되는 개스킷, 패드 등
- 산업용 석면마찰제품 : 건설기계, 농기계, 프레스 등 산업용기계 등의 브레이크, 클러치 등 🇸🇰